



바른사회시민회의 Citizens United for Better Society

@FactBrief

CUBS FACT BRIEF | 2016년 4월 22일 | 발행처 바른사회시민회의 | 발행인 전삼현 | www.cubs.or.kr

4·13 총선으로 본 시급히 개정해야 할 공직선거법 조항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이옥남)

이번 4·13 총선은 그 어느 총선 보다 입후보자 및 유권자 입장에서 혼란스러운 선거였다. 법정시한이 지나도 선거구는 확정되지 않았었고, 선거구가 미정인 상황에서 후보 확정도 지연되었다. 논란 끝에 3월 2일,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선거구가 확정되었지만 각당은 공천문제로 인한 계파갈등에 휩싸여 제대로 된 공약을 제시하지 못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각당은 정책공약 대결에 의한 선거운동을 펼치지 못했다.

게다가 매 선거마다 지적되는 공직선거법의 과잉규제 논란, 시대적 변화와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선거법 조항 등으로 선거 운동은 편법·탈법으로 변질되었다. 공명정대해야 할 선거가 법 규정을 제대로 지키려는 양태보다 법을 교묘하게 피해 편법 또는 탈법이 기승을 부리는 현상은 매번 반복되었다. 따라서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이번 4·13총선을 통해 고질적으로 등장한 편법적인 선거운동 양태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선거법 개정 요구를 통한 해결책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공직선거법에 ‘공천 및 후보 확정 시기’ 규정 필요

4·13총선을 앞두고 각당은 예외 없이 후보 공천으로 인한 당내 갈등을 겪었다. 각당의 계파 갈등으로 인한 공천 파동은 후보확정을 지연시키고, 결과적으로 유권자들의 입장에서 후보 및 후보가 내세운 공약에 대해 알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후보입장에서는 정책 대결을 하기 보다는 네거티브 선거 등으로 짧은 시간에 유권자에게 호소할 수 있는 선거 운동을 하게 되고, 유권자는 최적의 후보를 선출하기 보다는 차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겪게 되었다.

따라서 공천파동으로 인한 정치혐오 및 불신감을 낮추고 유권자들이 후보를 검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 즉 선거 3-4개월 전에는 후보가 확정되어야 한다는 여론이다. 즉, 유권자들이 인물 및 정책 공약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비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만일 정당이 관련 규정을 어길 경우, 정당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등의 처벌 조항도 필요하다.

2) 선출직 중 국회의원 후보는 면제되는 ‘공약재원조달방안’

공직선거법 66조에 의하면 ‘선거공약서에는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선출직 중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후보는 이 조항으로부터 예외다. 따라서 국회의원 후보는 선거공약서에 공약은 제시해도 재원조달방안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아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실제로 이번 4·13총선 선거공보물에 국회의원 후보들은 예산이 수반되는 공약을 상당수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이행방안 및 재원조달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유권자들의 입장에서 공약재원조달 방안이 없는 공약을 보고 실행가능한 공약인지에 대한 판단을 어렵게 한다. 이러한 공약은 매년 예산철이 되면 의원들을 경쟁적으로 ‘쫓지예산’에 내몰리게 하는 부작용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66조 개정을 통해 공약의 실현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재원조달방안 및 공약이행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 선심성 공약의 남발을 막고 생활밀착형 공약으로 민생을 돌보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무분별한 ‘여론조사’에 대한 규제 장치 필요

이번 4·13 총선을 혼란으로 이끌었던 여러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것은 무분별한 여론조사다. 여론조사 업체의 경쟁과 선거철만을 위해 운영되는 군소 업체들의 난립, 그리고 낮은 응답률과 여론을 반영하지 못한 표본조사의 문제점은 ‘엔터리 조사’ 결과를 낳아 후보 및 유권자들의 혼란만 가중시켰다.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가 상당부분 반영되는 정당의 공천으로 이어지고 이는 민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기도 했다.

따라서 법 개정을 통해 여론조사 기관 설립을 엄격하게 하고,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여 무분별하고 잘못된 여론조사 관행을 고쳐야 한다는 여론이다.

5)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기부행위’ 관련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는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된 행위를 선거운동에서의 기부행위로 보지 않으며, 따라서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또는 정당의 사무소를 방문하는 자에게 다과·떡·김밥·음료(주류는 제외한다) 등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식사에 버금가는 ‘다과류’를 제공하고도 젓가락 대신 이쑤시개를 내놓으면 식사가 아니라 ‘다과류’로 한다는 유권해석으로 김밥을 이쑤시개로 먹는 일이 빈번히 일어났다.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이다. 이 외에도 출마지역과 연관이 있으면 주례(별금 200만원)를 설 수 없으며, 가수나 코미디언이 유세현장에서 노래하거나 공연하면 불법 기부이며, 일반인이 선거사무소를 통해 연설자 지정받지 못하면 확성기 사용을 할 수 없다.¹⁾

1) 중앙일보, "김밥 젓가락 주면 불법 식사 이쑤시개로 먹으면 ok", 2016.04.5

6) 후보 현수막·선거 유세 소음 관련

공직선거법 제67조(현수막)에 의하면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당해 선거구안의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으며, 현수막의 규격 및 게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현수막은 사람들의 통행이 잦은 사거리나 상점에 설치되어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영업활동에 지장을 주기도 한다.

중앙선관위에 이러한 사항을 문의해 본 결과, 답변은 이러한 애로사항이 접수되지만 현행법상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법 개정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안전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후보자들이 안정적으로 선거운동을 펼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선거운동 기간 동안 유권자 및 시민들은 새벽 6시부터 밤 11시 까지 유세차량 확성기 소음에 시달려야 했다. 현행법상 확성기 사용 대수 및 시간등이 주민실생활과 무관하게 기계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소음 높이 등 기준을 마련하여 실생활에 피해를 줄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7) 반국가활동 등으로 해산된 정당의 당원에 대한 피선거권 제한

국회의원은 입법부 구성원으로 법을 제·개정하는 일을 한다. 즉,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주의의 핵심을 법을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반국가이적활동으로 위헌 판결을 받아 해산된 정당의 구성원이 입법부의 구성원이 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독일의 경우에는 위헌 정당인 공산당을 해산한 후 7000명이 사법 처리되었고, 정당해산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일정 기간 피선거권을 제안했다. 우리나라 국회에도 해산된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013년 9월에 발의되었다.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입법부의 법치주의부터 확립해야 할 것이다.